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71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68,520,290원, 지방교육세 6,422,940원, 농어촌특별세 2,996,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가. 원고는 2012. 2. 8. 어류 양식용 사료 제조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31.경 B(상호: C, 이하 '종전 사업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2.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그 취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그 결과 원고가 종전 사업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 1. 19. 원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68,520,290원, 지방교육세 6,422,940원, 농어촌특별세 2,996,920원 합계 77,940,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손질하지 않고 바로 조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뼈 등을 제거하고 세척, 가공, 저장, 포장한 식용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이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8-53호로 개정 고시된 것, 갑 제4, 13호증,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세분류상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번호 1021)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자가 영위한 주된 사업은 주위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사료도매업(분류번호 4620)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는 동물용사료제조업(분류번호 1080)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종전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5항에 의하면 위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 원고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 내지 산업활동이 그 주장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번호 1021)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종전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내용이 '① 어선에서 펌프(호스)로 곤쟁이를 트럭에 상차하고, ② 공장 사료작업통으로 운반하여 불순물을 선별한 후, ③ 냉동펜 상자에 담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냉동대차(선반틀)에 적재하고, ⑤ 냉동실에 입고 후 냉동처리하며 ⑥ 동결 후 냉동펜에서 꺼내 포장하고, ⑦ 포장된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다 주문판매'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종전 사업자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판매한 곤쟁이는 양식장에 생사료로 공급되는 것이었고 식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 사업자가 운영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원고 운영의 사업인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번호 1021)과 다른 사업인지 여부이다.

라.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는 통계청에 대하여, ① 수산동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생선 내장 등을 어류 양식장에 공급하는 활동과, ② 곤쟁이를 상자에 하차하여 선별, 냉동, 포장, 냉장실에 보관한 후 양식어가에 판매하는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세분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2017. 6. 15.경 ① 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선 내장 등의 생사료를 별도 가공 없이 어류 양식장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분류번호 46203 사료도매업"으로 분류되고, ② 곤쟁이를 상자에 하차하여 선별, 냉동, 포장, 냉장실에 보관한 후 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분류번호 46203 사료도매업"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8-53호로 개정 고시된 것, 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같다)에 의하면,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이 포함되고, 분류번호 46203의 사료도매업은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번호 102)에 관하여 '각종 수산동물 및 식용 해조류를 염장·건조·훈제·절임·통조림·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분류번호 10213)은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제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재료를 오로지 냉동하기만 하는 활동도 제조업의 '원재료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사업자가 한 산업활동에 냉동 과정이 주된 과정으로 포함되는 이상에는 그 산업활동은 통계청의 위와 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도매 및 소매활동에 포함될 수 없고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결국 분류번호 46203 사료도매업에 해당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종전 사업자의 사업 분류번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종전 사업자는 1996.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운수업·부동산, 종목은 냉동창고·수산물가공·특수화물·임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2. 2. 22. 폐업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2012. 3. 5.경 원고에게 한 지방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통보에 의하면, 원고는 입주계약 변경 전의 종전 사업자의 업종(분류번호)는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10213)으로, 입주계약 변경 후의 원고의 업종(분류번호)는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 외 1종(10213, 10219)로 하여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사업자의 산업활동이 공급받은 곤쟁이를 선별, 냉동하는 것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종전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 중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활동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산출물의 부가가치(액)의 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활동이 주된 산업활동이라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명세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사업자와 10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간 거래하였던 매출처인 진서영어조합법인의 E은, 종전 사업자는 냉동한 곤쟁이를 양어(식)장에 판매하고, 이를 매입한 양어(식)장 등에서는 곤쟁이를 분쇄하여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신고기간	업태	종목	금액(원)
2010년1기	제조, 운보	수산물가공, 냉동창고	14,852,595
2010년2기	제조업	양식용사료	34,161,888
2011년1기	제조업	양식용사료	48,295,755
2011년2기	제조업	양식용사료	52,283,898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였던 사업의 내용은 주로 동물용 사료, 특히 어류양식용 사료를 제조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분류번호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그 제조과정이 주로 재료가 되는 수산동물의 냉동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용 냉동 곤쟁이는 위 분류번호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에서 설명하는 '배합사료, 조제사료, 배합사료용 혼합조제품 및 조제보조사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분류번호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상 제조대상인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는데 위 냉동 곤쟁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에 속하는 세분류인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에 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시로 '단미사료 제조'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1 단미사료의 범위에는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종전 사업자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제조한 냉동 곤쟁이는 어류의 가공품으로서 단미사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종전 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다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고 관련 시설을 갖춘 후에 이러한 사업을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등록을 하거나 시설을 갖춘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등록이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한 경우 사료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종전 사업자의 사업이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 운영의 사업은 종전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남해인

판사 최미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별지

부동산 목록

1. [redacted]시 F 공장용지 3304.9㎡

2. 위 1항 기재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트지붕 2층 공장 및 냉동창고

1층 1380㎡

2층 140㎡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107.72㎡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9.6㎡

경량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 공장 443.7㎡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11.7㎡.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구 사료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단미사료)·배합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구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3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

2. 동물성	가.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우모분·모발분·제각분·육분·육골분·육즙흡착사료·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피혁가공분말·잠용박·번데기·새우분·게분·골뱅이분·육가공부산물·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수지박(우지박·돈지박을 포함)·동물성발효사료·유도단백질(가수분해·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계란분말(난황 및 난백분말 등 가공품을 포함)·육포
	나. 무기물류	골분·골회·어골분·패분
	다. 유지류	우지·돈지·어유·양지·식용잔유(정제된 것)·닭기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별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8-53호로 개정 고시된 것, 갑 제4, 13호증)

아.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1)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의 5단계로 구성된다.

2) 부호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토록 했다.

3)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4를 기본체계로 하였으나,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항목과 분류부호를 설정하였다.

4) 분류항목간에 산업내용의 이동을 가능한 억제하였으나 일부 이동내용에 대한 연계분석 및 시계열연계를 위하여 부록에 수록된 신구 연계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5)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6)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으며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 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9" 기타 항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분류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분류가 세분되지 않을 때 "0"을 사용한다(예를 들면 중분류 02/임업, 소분류/0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C 제조업(10 ~ 33)
Manufacturing

10	식료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Slaughtering of Livestock, Processing, Preserving of Meat and Meat Products
1011	도축업	Slaughtering of Livestock
10110	도축업	Slaughtering of Livestock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Preserving of Meat and Meat Products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Preserving of Poultry Products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Processing, Preserving of Other Meat and Meat Products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ishes and Edible Seaweeds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ishes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Smoked and Similar Prepared Fish Products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ishes and Fish Products-Dried, Salted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zen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Other Fishes and Fish Products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Edible Seaweeds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Edible Seaweeds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ruit and Vegetables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ruit and Vegetables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Fruit and Vegetables, Pickled Foo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Livestock Feeds and Prepared Animal Feeds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Livestock Feeds and Prepared Animal Feeds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Manufacture of Livestock Feeds and Prepared Animal Feeds
11	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Beverages**
111	알콜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1111	발효주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Fermented Alcoholic Beverages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Manufacture of Rice Wines
11112	청주 제조업	Manufacture of Refined Rice Wines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Manufacture of Malt and Malt Liquors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Fermented Alcoholic Beverages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Distilling, Rectifying and Blending of Spirits , Ethyl Alcohol Production from Fermented Materials
11121	주정 제조업	Distilling of Ethyl Alcohol
11122	소주 제조업	Manufacture of Blended and Distilled Sojoo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Distilled Alcohol from Fermented Materials and Blending of Spirits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Manufacture of Ice and Non-alcoholic Beverages, Production of Mineral Waters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Manufacture of Ice and Non-alcoholic Beverages, Production of Mineral Waters
11201	얼음 제조업	Manufacture of Ice, Except Dry Ice
11202	생수 생산업	Bottling of Waters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12	담배 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120	담배 제조업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C 제조업(10 ~ 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 포장 ·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 임 · 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 · 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벨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 · 건조 · 훈연 · 염장 · 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육지동물고기 통조림 제조
- 육지동물고기 햄, 소시지 제조
- 육지동물고기 커틀릿 제조
- 육지동물고기 건조 · 훈제품 제조
- 육지동물고기 분 및 조분 생산(식용 또는 비식용)
- 밀폐 포장한 육지동물고기 가공품 제조

<제 외>
- 식용동물(돼지, 소 등) 시방용출 및 성제(1040)
- 가금류의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0121)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각종 수산동물 및 식용 해조류를 염장 · 건조 · 훈제 · 절임 · 통조림 · 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산물의 포획 또는 채취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산물의 가공활동만을 수행하는 공장형태의 가공선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동물을 염장 · 건조 · 훈제 · 절임 · 통조림 · 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어류의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및 등뼈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껍질을 벗겨 사람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산업활동도 제조활동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분류한다. 소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판매과정에서 수산물을 처리하는 활동은 판매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아 여기에서 제외된다.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과정에 결합된 냉동 및 포장활동은 그 가공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제 외>
· 수산동물의 유지를 생산하는 경우(1040)
· 육상 또는 특수 가공 선박에서 고래가공처리만을 수행하는 경우(101)
· 수산동물고기를 가공하여 수프 및 유사식품 제조하거나 이들의 엑스와 즙을 추출하는 활동(1079)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예 시>
· 어묵 및 소시지 제조
· 어류 조미제품 제조
· 식용 어분 생산
· 젓갈 조미제품 제조
·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 외>
·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012)
· 비식용 어분생산(10219)
·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0212)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어류 염장품 제조
· 건어물 제조
· 어란 염장품 제조
· 젓갈류 제조(조미제품이 아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 제조 · 수산동물 염장건조제품 제조
·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 외>
· 직접 소비용의 조미 젓갈제품 제조(10211)
·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0211)
·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0220)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조제 활동에 결합된 냉동활동은 그 가공 조제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예 시>
· 냉동 어류 생산 · 냉동 갑각류 생산
· 냉동 수산물 생산 · 연체동물 냉동품 생산

<제 외>
· 냉동수산물 보관업(52102)
· 해조류 냉동물 제조업(10220)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 · 냉장 · 냉동상태의 저민어육(피레트)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이 포함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어류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예 시>
·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 수산동물 탈각활동
· 저민어육(피레트) 생산
·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 오징어채 제조
· 비식용 어분 생산

<제 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 · 정리 활동(03220)
· 식용어분 생산(10211)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식용 해조류를 조제 · 염장 · 건조 · 냉동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해조류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용 한천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해조류 건조품 제조
· 해조류 염장품 제조
· 조미 해조류 제조
· 조미 구운김 제조
· 식용 한천 제조
· 해조류 튀김제품 제조

<제 외>
· 수산동물 가공품 제조(1021)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및 감자를 건조, 절임, 조리, 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과실,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잼, 젤리 및 기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주스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그외 기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조란 껍질 제거제품 생산 · 세일가공품 제조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용 조제사료를 포함하여 실험용 동물, 가축 및 가금 등의 각종 동물사육용 또는 어류양식용 배합사료, 조제사료, 배합사료용 혼합조제품 및 조제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골기, 뿌리 등을 절단 · 분쇄하는 활동은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배합사료 제조 · 단미사료 제조
· 비스킷 제조(동물용) · 어류용사료 제조
· 조제보조사료 제조 ·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 생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신상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중개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 운전자가 딸린 승용 차량, 트럭의 임대는 492, 493에 분류
· 차량견인 활동(4931)
· 차량용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477)

451 자동차 판매업

신상품 및 중고자동차를 도 · 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 판매(4530)

4511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상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 · 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각종 승용차 도 · 소매
· 각종 화물차량 도 · 소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예 시>

· 목제품 중개	· 종이제품 중개
· 원유 중개	· 귀금속 중개
· 철강 중개	· 화학제품 중개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은 농축산물 및 수렵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산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 수산물 및 가공품 도매(463)

46201 곡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은 곡물, 도정된 곡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쌀, 보리, 밀 도매	· 콩, 깨, 옥수수 도매
· 구근 도매	·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 곡물가루 도매(46329)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 채소, 과실 등의 종자나 이들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곡물종자 도매	· 채소 및 과실묘목 도매
· 채소종자 도매	· 화훼종자 도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46203 사료 도매업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단미사료 도매
- 배합사료 도매
- 보조사료 도매
- 어류용 사료 도매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화초, 과실수, 정원수 등 각종 산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꽃 및 난 도매
- 관상수 도매
- 잔디 도매
- 분재류 도매

<제 외>

- 채소, 화훼,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46202)

46205 산동물 도매업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소, 말, 돼지 도매
-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 조류 도매
-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